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69

발의연월일: 2021. 6. 3.

발 의 자:최형두·강기윤·권명호

김성원 · 김영식 · 박성민

엄태영 · 이종성 · 정운천

태영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5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함.

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관계중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'특별자치시장'을 추가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4항). 법률 제 호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4항 중 "광역시장·도지사"를 "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" 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	제5조(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
획의 수립) ① ~ ③ (생 략)	획의 수립) ① ~ ③ (현행과
	같음)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	4
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3	
조에 따라 기술혁신 지원사업	
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(이	
하 "관계중앙행정기관"이라 한	
다)의 장, 특별시장· <u>광역시장·</u>	<u>광</u> 역시장·특
<u>도지사</u> 또는 특별자치도지사	별자치시장·도지사
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	
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	
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	
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